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2호 2015. 7. 27.(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도곡로 116 외 2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6. 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7-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24-2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116 (대곡동)	2013-07-30	도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2-4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142 (오류동, (주)효진)	2012-10-25	"아무지고 탐스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6-6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8 (오류동, 믿음산업)	2012-10-25	뱃길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5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59 (가좌동)	2009-09-22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무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무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무라는 뜻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24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61 (가좌동)	2009-09-22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무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무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무라는 뜻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8-2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2로 20 (오류동, 신동해(주))	2012-10-25	보듬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5-11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21 (오류동, 인천산업)	2012-10-25	"가슴에 불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9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9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62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24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3-5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72번길 11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1-6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94 (검암동, 메이빌)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72-1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로 13-6 (시천동)	2009-07-06	경인아라뱃길 조성으로 향후 위치에측성을 고려하여 제명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1-2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9-12 (마전동, 헤드림)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10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7-1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9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9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1-6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46 (오류동, 동해인더스트리(주))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1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6-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22번길 13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6-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16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7-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63번길 10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11 (당하동, 디자인타운)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11-10 (당하동, 디자인타운)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11-9 (당하동, 디자인타운)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5-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85 (당하동, 디자인빌)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6-2	인천광역시 서구 허암길 13-3 (검암동)	2009-09-22	허암 정희량 선생의 호를 따 허암길이라 명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7-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경서동 673-7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62-28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인사(02-261-1107)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0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7.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도요지로 213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검암동 661-6	도요지로 213	2015.07.17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09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7.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61	1-2	2,270.0	8획지 분할	61	1-2	2,270.0	7획지 분할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61	1-2	분할가능선의 변경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 규정 신설 필요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규정 신설 필요

### 2. 주요내용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조항 신설
-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 조건 신설
- 전체 체제(장 및 조항)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5,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3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1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8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2.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을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4,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생활체육단체의 지방보조금(사업비)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을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개 정 안	“ 별 지 참 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취	“ 별 지 참 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로,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를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규정”을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국민체육진흥법</u>」 제3조에 따라----- ----- ----- -----<u>인천광역시 서구민</u>----- ----- ----- ----- ----- -----.</p>
<p>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u></p>	<p>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u>----- ----- -----.</p>
<p>제3조(보조금 지원) ① <u>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 -----<u>범</u> <u>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u>----- ----- 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제4조(검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p>	<p><u>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u></p> <p><u>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u></p> <p><u>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u></p> <p><u>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4조(검사) ① -----  - 따라----- 단  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다른 조례 적용) -----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p>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 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